

순조대 후반 정국과 근기남인의 역할

최우혁*

- I. 머리말
- II. 효명세자 대리청정과 서만수 사건
- III. 효명세자의 정국 주도 노력과 김교근 사건
- IV. 순조의 재집정과 근기남인의 노론 청류 탄핵
- V. 맺음말

〈국문초록〉

순조대 후반 근기남인(近畿南人)은 당시 정국에서 주요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安東金氏)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였다.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대리청정이 시작된 직후 전 초산부사 서만수(徐萬修)의 탐학상이 보고되자, 서만수의 아들 서유규(徐有圭)가 서만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봉조하 이조원(李肇源)과 대호군 김기후(金基厚)를 공격하였으나, 효명세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사간 홍영관(洪永觀)과 지평 한진호(韓鎭辰)가 이조원에게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였는데, 효명세자는 이를 거부하며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홍영관과 한진호는 모두 근기남인으로서 안동 김씨 가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서만수가 공격받고 처벌된 사안은 대리청정 초기 효명세자의 김조순계 견제라는 성격을 가지며, 서유규의 호소는 김조순계의 반발이 담겨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김조순계의 입장에 서서 이조원을 탄핵한 근기남인의 행위는 김조순계와 근기남인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서만수 사건 이후에도 효명세자는 자신을 지지해줄 측근세력을 형성하며 입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를 강화해나갔다. 측근관료로는 청명당(淸明黨) 인사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던 김로(金鑄), 이인부(李寅溥), 김노경(金魯敬) 등과 조만영(趙萬永), 조인영(趙寅永)으로 대표되는 풍양 조씨(豐壤趙氏) 가문 세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기남인 심영석(沈英錫)과 한진호, 그리고 이유하(李游夏)는 김조순의 7촌 조카인 호조판서 김교근(金教根)과 그 아들 김병조(金炳朝)를 탄핵하였다. 근기남인의 김교근 부자 탄핵은 효명세자의 정국 주도 및 세력 확대에 대한 김조순계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김교근이 비록 김조순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효명세자의 비호를 받으며 그 측근들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효명세자 사후, 김조순계는 김교근을 비롯하여 대리청정기에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함으로써 한동안 위축되었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반면, 순조(純祖)는 재집정을 통해 대리청정 이후의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효명세자가 흥서한 직후, 삼사에서는 효명세자가 복용할 당제에 자기 마음대로 시험 삼아 재료를 첨가한 약원제조 홍기섭(洪起燮)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순조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도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신료들이 김로의 죄상을 거론하며 국정을 설치하여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한 것이다.

그러던 중 근기남인 부사과 김우명(金遇明)이 상소하여 전 평안도관찰사 김노경의 처벌을 청하였다. 김우명이 상소하고 나서 김조순계 인사들이 뒤이어 김노경을 탄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김교근 사건 때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었다. 한편 순조가 여러 죄인들의 석방을 하교함에 따라 유배되었던 노론 청류들이 비로소 석방되었고, 탄핵을 받아서 끝내 유배되었던 김노경도 석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리청정 당시 처벌받았던 심영석과 한진호를 비롯한 근기남인이 정계로 복귀하게 된다. 심영석과 한진호의 석방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위기를 맞았던 김조순계의 권력이 순조 재집정기에 이르러 다시 안정화되었음을 뜻한다.

순조가 재집정한 뒤 근기남인이 곧바로 효명세자에 의해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한 행보는 근기남인과 효명세자의 정치 노선이 달랐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순조대 후반까지 근기남인과 김조순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근기남인이 김조순계의 우익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근기남인, 순조, 효명세자, 서만수, 김교근, 김로, 김노경

I. 머리말

정조(正祖)가 승하하고 어린 나이의 순조(純祖)가 즉위함에 따라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수렴청정으로 정순왕후와 연결되어 있던 벽파(僻派)가 순조대 초반의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정순왕후가 승하하면서 벽파는 정치적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1805년(순조 5) 벽파계 인물인 김달순(金達淳)이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비판하였던 박치원(朴致遠)과 윤재겸(尹在謙)에게 시호와 벼슬을 추증해달라고 청한 사건으로 벽파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¹⁾ ‘정조의 임오의리’를 부정하고 ‘영조의 임오의리’를 재천명하였던 벽파가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왔던 임오의리를 자파의 충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²⁾

1806년(순조 6) 병인경화(丙寅更化)로 벽파가 몰락한 이후 정조(正祖)로부터 국구(國舅)로 지목된 안동 김씨(安東金氏) 가문의 김조순(金祖淳)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조(純祖)는 전국 각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민폐를 보고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군제·토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편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 고자 하였다. 그러나 순조는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당시 권력자들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관료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데다가, 1809년(순조 9)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재정이 궁핍해지고, 1811년(순조 11)의 평안도 농민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끝내 좌절을 겪게 되었다.³⁾

1)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12월 27일 (병오).

2) 최성환,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韓國史研究』 180, 2018, 130쪽.

3)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 上·下, 청년사, 1990, 85~89쪽.

순조는 안동 김씨 가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재찬(金載攢)이나 이서구(李書九) 등 반척족적인 인물을 등용하였으나, 이 역시 역부족이었다. 이후 순조는 효명세자(孝明世子)에게 정치적인 분위기를 익히도록 하였으며, 동궁요속을 배치하여 대리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육성하였다.⁴⁾ 그리고 1827년(순조 27)에 이르러 마침내 효명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수행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정조대 탕평정국 속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근기남인(近畿南人)은 순조대 초반 벽파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크게 위축되었다. 근기남인 가운데 일부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근기남인의 정적이었던 벽파가 이를 빌미로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켜 다수의 근기남인을 연루시켜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김달순 사건 이후 벽파가 축출됨에 따라 제거되었던 근기남인은 다시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순조대 후반 정국과 이 시기 근기남인의 활동에 관련된 연구로는 우선 순조대 후반 정국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 중 하나인 효명세자 대리청정을 살핀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조의 병환으로 인해 시행된 것으로 보았고, 효명세자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의리론을 폈다고 주장하였다.⁵⁾

순조대 후반을 포함하여 세도정치기 전체를 다룬 연구도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19세기 전반의 정치를 정치세력, 정치구조, 정치운영, 정치운영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그전까지 단편적으로 행해졌던 분산적 연구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정국의 추이를 살핀 부분에서는 남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남인이 안동 김씨 가문의 김교근(金教根)을 탄핵함으로써 집권세력인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

4) 김명숙,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25~29쪽.

5) 申龍雨, 「翼宗代理聽政에 대한 考察 - 代廳施行 過程과 政務處理를 中心으로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려고 했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해석은 19세기 정치론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 연구는 19세기의 반외척세력을 중심으로 그들의 동향과 정치론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하면서 남인을 언관으로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동 김씨 세력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연구에서 내세운 해석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⁷⁾

세도정치기 국왕과 안동 김씨 가문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한 연구도 있다. 당시 순조·효명세자와 안동 김씨 가문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조와 김조순의 이해관계가 상호보완적인 동시에⁸⁾ 정치적으로 공조하고 있었으며, 안동 김씨 가문이 국왕의 보위세력으로 존재하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⁹⁾ 이처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으나, 기존의 연구처럼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를 견제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여전히 존재한다.¹⁰⁾

순조대 후반에서 현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하였던 정치세력을 살핀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인이 김교근을 탄핵한 사건, 효명세자 대리청정 이후 안동 김씨 세력과 마찬가지로 시파(時派)에 속하는 남인 신윤록(申允祿)이 효명세자와 가까웠던 인물들을 탄핵한 사건을 다룬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근기남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는 미약한 편이다.¹¹⁾

6)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0.

7) 김명숙, 앞의 책, 2004.

8) 최재봉, 「세도집권기 김조순의 정국운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 국왕,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韓國史論』 61, 2015.

10) 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 2011.

11) 김정자, 「순조 후반 현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韓國學

순조대에 활동한 근기남인을 다룬 연구도 있다. 정약용(丁若鏞) 해배운동을 다룬 연구에서는 안동 김씨 가문과 반남 박씨(潘南朴氏) 가문의 갈등 속에서 근기남인의 일부가 안동 김씨 가문과 연계하여 정약용의 해배를 시도하였음을 밝혔다.¹²⁾ 정조대에서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근기남인이 명의죄인(名義罪人) 혐의와 천주교 신봉 혐의를 극복하고 정치 명분을 확립하는 과정을 살핀 연구도 등장하였다.¹³⁾

대체로 순조대 정국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근기남인이 효명세자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기남인은 효명세자보다는 안동 김씨 세력과 더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조대 후반에 발생한 서만수(徐萬修) 사건, 김교근 사건을 비롯하여 노론 청류들이 탄핵당한 사건에서 근기남인이 보인 행보는 순조와 효명세자가 견제하고자 하였던 안동 김씨 가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순조대 후반 정국에서 근기남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당시 정치세력 간의 관계 및 국왕과 신료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II. 효명세자 대리청정과 서만수 사건

순조(純祖, 1790~1834)는 친정 이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 노력하였으나, 끝내 좌절을 겪게 되었다. 그러한 속에서 1827년(순조 27) 2월 9일, 순조는 자신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 몸을 보살

論叢』54, 2020.

- 12) 鄭奭鍾, 「純祖年間の 政局變化와 茶山解配運動」, 『國史館論叢』47, 1993; 김태희, 「다산의 해배과정과 19세기 정치적 상황」, 『다산과 현대』11, 2018.
- 13) 최우혁, 「정조~순조대 近畿南人の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朝鮮時代史學報』90, 2019.

피던 때가 많았고, 기무 역시 정채된 것이 많았다고 하며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에게 대리청정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¹⁴⁾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된 직후인 3월 11일, 전 초산부사(楚山府使) 서만수(徐萬修, 1764~1827)의 탐학상이 보고되었다. 서만수의 악형으로 죽은 자가 7명이나 되고,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수량이 6~7만 냥이 된다는 것이었다. 효명세자는 우승지 김병조(金炳朝, 1793~1839)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평안도관찰사인 이희갑(李羲甲, 1764~?)과 함께 실정을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이희갑이 장계를 올려 서만수의 죄상을 상세히 보고하자, 효명세자는 장계를 궁에 보관하고 서만수를 가두도록 명하였다.¹⁵⁾

3월 16일에는 대사헌 이면승(李勉昇, 1766~1835)이 당면한 급무 6가지를 상서하였다. 6가지 조목 중에서 4번째 조목은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를 징계하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러한 탐관오리의 예로 서만수를 거론하였다.¹⁶⁾ 그러자 장령 유영오(柳榮五, 1777~?)는 오히려 이희갑을 공격하였다. 이희갑이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한 뒤, 서만수를 감싸줌으로써 서만수로 하여금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효명세자는 유영오의 상서 내용이 지나치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¹⁷⁾ 3월 26일에 평안가도사(平安假都事) 조진익(趙鎭翼)이 이희갑이 정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실을 고하자, 결국 이희갑의 관직을 빼앗으라는 명을 내렸다.¹⁸⁾

서만수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는 와중에 서만수 측의 대응이 이어졌다. 3월 28일 서만수의 아들 서유규(徐有圭, 1798~?)가 순조의 거동길에서 서만수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서유규는 서만수의 탐학무량함이 장문(狀聞)에 올라왔는데도 감히 다른 사람의 무함을 받았다는 말로써 방자하게 거동길에서 징을 울렸다는 죄목에 따라

14)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2월 9일 (을묘).

15)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11일 (병술).

16)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16일 (신묘).

17)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17일 (임진).

18)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26일 (신축).

도(徒) 3년으로 징배되었다.¹⁹⁾

서유규의 원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으나, 거기서 서만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봉조하 이조원(李肇源, 1758~1832)과 대호군 김기후(金基厚, 1747~1830)를 거론하며 이들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유규가 호소한 다음날인 3월 29일, 이조원의 아들인 지사 이용수(李龍秀, 1776~?)가 복을 치며 서유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용수는 여기서 서유규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이조원을 공격한 것과 이조원이 김기후와 수작하였다고 모함한 것에 대해 항변하였기 때문이다.²⁰⁾

김기후 역시 서유규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며 반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서유규가 이조원과 김기후를 공격하였던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효명세자는 이조원의 집안과 김기후가 서만수 측으로부터 무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용수와 김기후를 안심시켰다.²¹⁾

3월 30일, 초산부안핵사(楚山府按覈使)로 파견된 김병조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들며 서만수의 죄상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효명세자는 개좌(開坐)하여 서만수를 엄한 형벌로 다스리고 공초를 받아서 보고하도록 명하였고,²²⁾ 4월 1일에 이르러 서만수를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하고 서만수의 자식들 중에서 사적(仕籍)에 오른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현직을 허락하지 말도록 명하였다.²³⁾ 한편으로는 4월 3일에 이조원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받은 모함이 무고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관작을 삭제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때에도 효명세자는 이조원이 서만수 부자에게 무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며 이조원을 안심시켰다.²⁴⁾

19)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28일 (계묘).

20)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29일 (갑진).

21)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29일 (갑진).

22)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30일 (을사).

23)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1일 (병오).

24)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3일 (무신).

며칠 뒤 효명세자는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김병조를 성균관대사성으로 삼고,²⁵⁾ 이용수를 한성부관윤으로 삼았다.²⁶⁾ 그리고 김병조의 아버지 김교근(金敎根, 1766~?)을 특별히 이조판서로 임명하였는데,²⁷⁾ 이처럼 서만수의 죄상을 조사한 인물 및 그의 친족, 서유규로부터 무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 연이어 관직에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만수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8월 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앞서 5월 28일 추자도에 유배되어 있던 서만수가 풀고되었는데,²⁸⁾ 8월 4일에 이르러 서유규가 궐문 안으로 들어와 북을 치며, 죽은 서만수의 억울함을 다시 호소한 것이다. 서유규는 서만수가 이조원의 역적 행위를 힘써 성토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화를 입고 죽게 되었으며, 지난봄에 징을 치고 호소하였을 때 서만수가 미처 올리지 못한 상소의 초본을 함께 올렸는데 이것을 아직 조정에 선포하지 않아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토벌해야 하는 의리가 지체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효명세자가 서만수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당(奸黨)’이 서만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금부에서 형장을 가하는 것은 법에 벗어난 것인데도 형관이 이조원의 인척이기 때문에 이조원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였고, 위리(圍籬)를 치마까지 치는 것은 국법이 아닌데도 의금부의 낭관이 사주를 받아 조종하였으며, 아들이나 종이 왕래하는 것은 조정에서 신척한 적이 없는 데도 그 고을의 수령이 사주를 받아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서유규는 서만수가 죄에 걸려든 것도 이조원·이용수 부자가 이조원이 갑술년[1814년(순조14)]에 꾸민 역적 모의를 발설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조원이 꾸민 역적 모의가 실행

25)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10일 (을묘).

26)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20일 (을축).

27)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27일 (임신).

28)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5월 28일 (계묘).

되지 못한 것은 다행히 그때의 정승이 엄히 배척한 데에 힘입은 것이었고, 또 신하들이 서만수가 미처 올리지 못했던 상소를 본 뒤에도 한 사람도 이조원을 성토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조원의 위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서만수의 죄상에 대해서도 관찰사와 안핵사가 무함하고 뒤집어씌운 것이며, 이조원의 세력만 믿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서유규를 유배보내도록 명하였고, 결국 서유규는 홍원현(洪原縣)에 유배되었다.²⁹⁾

앞서 살펴보았듯이 봄에 있었던 서유규의 호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유규의 격고(擊鼓) 직후부터 사건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신료들의 요청이 제기되었다. 먼저 형조판서 이면승(李勉昇, 1766~1835)이 나서서 빨리 실상을 밝힐 것을 청하였고, 뒤이어 형조참의 유정양(柳鼎養, 1767~?)이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날 이조원과 김기후가 자신들이 무함을 받았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서유규의) 말이 원한에서 나왔으니,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이 일이 전부 무함에서 나온 것 또한 이미 환히 알고 있다.’라고 하며 여전히 이조원과 김기후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였다.³⁰⁾

8월 5일부터는 대간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사간 홍영관(洪永觀, 1777~?)이 상서하여 이조원을 탄핵하였는데, 즉 서유규의 공초를 보면 맥락과 증거가 모두 조사해볼 단서가 있으므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도한 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이와 함께 이조원이 스스로 하소연한 글이 방자하고 무엄한데다가 꺼리는 것이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 이때에도 효명세자는 홍영관의 관직을 빼앗았고, 승지 이해청(李海淸)이 이조원에게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였을 때에도 직분을 벗어난 말을 한 이해청을 정주목(定州牧)에

29)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4일 (정축).

30)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4일 (정축).

유배함으로써 이조원 탄핵 요청에 대처하였다.³¹⁾

효명세자의 강경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지평 한진호(韓鎭厚, 1792~?)가 이조원에게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다가 체차되었다. 한진호에 이어 양사의 대신(臺臣)들과 홍문관의 관원들까지 나섰지만, 효명세자는 이들을 체차하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는 등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³²⁾

8월 6일에는 부제학 정기선(鄭基善, 1784~1839)도 서유규의 일을 조사할 것, 대간의 관직을 빼앗은 것과 승지를 유배보낸 것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³³⁾ 8월 7일에는 대사간 이문회(李文會, 1758~1828), 장령 이의원(李毅遠)이 이조원의 국문을 청하였고,³⁴⁾ 8월 8일에는 대사헌 류상조(柳相祚, 1763~1836)와 사간 정동환(鄭東煥, 1767~1838)이 이조원을 조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역시 효명세자의 반대에 부딪혔다.³⁵⁾

이처럼 효명세자는 이조원의 처벌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8월 11일, 대호군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이 이조원의 죄상을 상서하였다. 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1814년 순조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조원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감히 말할 수 없고 차마 제기할 수 없는 말로 천지에 없었던 흉측한 모의를 만들어 내어 김기후에게 빌붙었으며, 흉서가 정승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다행히도 그 당시의 정승이 서로 편지를 왕복하여 엄한 말로 배척한 덕분에 당시의 국구가 미리 그 일을 알아마침내 흉측한 모의를 감히 부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조정철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상서하자, 효명세자의 반응도 이번에는 달랐다. ‘사실이 이러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조정철의) 상서를 보니 깜짝 놀랐다.’고 하며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한

31)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5일 (무인).

32)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5일 (무인).

33)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6일 (기묘).

34)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7일 (경진).

35)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8일 (신사).

편 영부사 한용귀(韓用龜, 1747~1828), 판부사 김사목(金思穆, 1740~1829),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1760~1840), 판부사 임한호(林漢浩, 1752~1827), 좌의정 이상항(李相瓚, 1763~1841) 등 대신(大臣)들까지 나서서 사실 규명을 청하였고, 양사와 홍문관에서 이조원·김기후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³⁶⁾

한편 갑술년의 홍서가 나왔을 때 국구가 미리 그 일을 알았다고 한 조정철의 상서가 나오자, 8월 12일에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이와 관련하여 차자를 올렸다. 자신은 1814년 당시 이조원의 홍서를 보지 못한데다가, 1824년(순조 24)에 서만수가 그때의 일을 거론하며 상소하여 성토하려고 하자, '신사년 이전이라면 발설할 수 있지만, 신사년 이후에는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성상께서는 자신에 관계되는 일이니, 어찌 몇 해 뒤에 소급하여 다스려서 하늘에 계신 선후(先后)의 명령을 슬프게 하고 선후의 사친(私親)의 집안을 손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는 것이다.³⁷⁾

김조순의 차자에서 등장한 신사년의 경우에는 1821년(순조 21)으로서 정조비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가 승하한 해이다. 그리고 일이 순조에게 관계되며 선후의 명령을 슬프게 하고 사친의 집안을 손상하게 한다는 말에서 사친의 집안이란 효의왕후의 집안인 청풍 김씨(淸風金氏) 가문을 가리킨다. 즉 김조순은 청풍 김씨 가문의 구성원이자 효의왕후의 사촌오빠인 김기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차자에서 나타나듯이 김조순은 이조원의 처벌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는 양사와 홍문관을 비롯해 대신들까지 나서서 이조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을 요청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조순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면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

36)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1일 (갑신).

37)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2일 (을유).

로 보인다.

김조순의 우호 세력을 살펴보면 우선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서만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만수는 영조대에 형조판서·우참찬 등을 역임한 서명신(徐命臣, 1701~1771)의 아들로, 서만수가 이조원의 역적 모의를 성토했다고 하면서 김조순을 찾아가 상의한 것을 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 규명을 촉구한 한용귀·남공철·이상황 등도 순조대 초반부터 김조순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인물들이었다.

근기남인(近畿南人) 역시 김조순과 우호 관계였다. 이조원을 탄핵한 홍영관이나 한진호는 모두 근기남인으로서, 근기남인과 김조순 가문의 관계도 순조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근기남인은 숙종대에 세 차례 환국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제공(蔡濟恭, 1720~1799)이 영의정에 오르는 등 탕평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다만 순조대 초반 벽파 주도의 정국에서 신유박해(辛酉迫害)를 겪으며 근기남인의 다수가 천주교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이로써 근기남인 세력은 정조대만큼의 세력을 결집할 수 없게 되었다. 정조대 후반 체제공계와 목만중계의 대립으로 인한 근기남인 내부의 분화도 근기남인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목만중계는 정치적으로는 벽파와 연계한데다가 사상적으로는 강경한 척사관을 바탕으로 순조대 초반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³⁸⁾ 목만중계의 홍희운(洪羲運, 1752~?)이 남인을 주도한다고 평가받을 정도였다.³⁹⁾

그러나 체제공계는 1806년(순조 6)의 병인경화(丙寅更化)로 김달순(金達淳, 1760~1806) 등 벽파가 제거될 때, 김조순 중심의 시파와

38) 최우혁, 앞의 논문, 2019, 285~290쪽.

39) 『訥菴記略』, “丙寅金達淳入相, 氣勢張甚, 言者以爲早晚起大獄, 鋤去時論者, 而達淳主老論, 徐滢修主少論, 洪羲運主南人.”

함께 벽파계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성토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홍시부(洪時溥, 1749~?)가 있는데, 홍시부는 병인경화 당시 김달순·이동형(李東馨, 1734~?)·이익모(李翊模, 1747~1812)·황승원(黃昇源, 1732~1807) 등의 처벌과 심환지(沈煥之, 1730~1802)·김관주(金觀柱, 1743~1806)의 관작 추탈을 청하였고, 정조대 벽파의 영수였던 김중수(金鍾秀, 1728~1799)를 정조의 묘정에서 출향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⁴⁰⁾

그 외에도 한치응(韓致應, 1760~1824)·최헌중(崔獻重, 1745~?)·윤필병(尹弼秉, 1730~1810)이 김귀주(金龜柱, 1740~1786) 토죄와 김중수 출향을 청하는 등⁴¹⁾ 근기남인의 다수가 벽파 공격에 참여하였다. 근기남인 중에서도 체제공계 남인의 경우에는 김조순과 밀접한 관계였다. 병인경화 이후 김조순계가 비변사를 장악함에 따라 순조의 국정 주도가 어렵게 되는데, 이때 순조는 외삼촌 박종경(朴宗慶, 1765~1817)을 등용하여 김조순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박종경은 노론 벽파계와 결탁하여 김조순을 공격하였고, 그러면서도 순조는 한편으로 김조순계와 박종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인 시파를 등용하였다.⁴²⁾

남인 시파는 체제공계 남인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는 당시 체제공계 남인이 김조순계와 연계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게 해준다. 실제로 김조순은 체제공 신원운동을 수용하는 등 남인계를 배려하고 있었다.⁴³⁾ 그리고 체제공계 남인과 김조순계의 관계는 순조대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조순계 인물인 서유규가 서만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조원의 처벌을 청하였을 때,

40) 『일성록』, 순조 6년 2월 1일 (기묘): 『일성록』, 순조 6년 2월 30일 (무신): 『일성록』, 순조 6년 3월 6일 (갑인): 『일성록』, 순조 7년 8월 6일 (을해).

41) 『일성록』, 순조 6년 6월 22일 (무술): 『일성록』, 순조 7년 8월 6일 (을해).

42) 鄭奭鍾, 앞의 논문, 1993, 93~96쪽.

43)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0, 695쪽.

홍영관이나 한진호로 대표되는 체제공계 남인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조대 후반 체제공계 남인의 주요 인물인 홍영관은 홍시부의 아들이며, 한진호는 한치응과 친척이다. 또 홍영관의 딸과 한진호의 아들인 한계원(韓啓源, 1814~1882)이 혼인을 한 사실을 통해 체제공계 남인이 혼맥으로도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내부 관계를 봤을 때, 이 시기까지도 근기남인의 다수가 김조순의 우호 세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근기남인이 김조순의 우호 세력으로 활동한 배경 중 하나는 그들이 과거처럼 뚜렷한 하나의 정치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근기남인과 달리 이조원의 경우에는 김조순계와 거리가 있었던 인물로 파악된다. 노론의 주요 가문 중 하나인 연안 이씨(延安李氏) 가문의 이조원은 정조대에 형조판서를 역임한 이민보(李敏輔, 1720~1799)의 아들로서, 이민보는 정치적으로 시파계 김조순보다는 벽파계 인물인 김치인(金致仁, 1716~1790)이나 김종수 등과 더 가까웠다.

이민보가 작성한 김치인의 행장을 보면 김치인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민보는 노론과 소론·남인과의 갈등에서 노론의 우위와 김치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⁴⁴⁾ 이는 이민보와 김치인이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민보의 이모의 종손이 청풍 김씨 가문의 김종수이고,⁴⁵⁾ 김종수의 재당숙이 김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혈연적으로도 얽혀 있었다.

그 외에도 이민보의 종제 이직보(李直輔, 1738~1811)는 송환기(宋煥箕, 1728~1807) 등과 함께 정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노론 산림으로 대우받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이조원 가문은 노론 명

44) 『豊墅集』卷15, 「領議政古亭金公行狀」.

45) 『일성록』, 정조 16년 7월 25일 (입술).

문으로서 순조대 후반까지 그 지위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발생한 서만수 사건으로 인해 이조원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척신 김기후 역시 김조순계와 거리가 있었다. 김기후는 정조대에 총융사·금위대장·장용대장 등을 역임한 김지묵(金持默, 1725~1799)의 아들이자, 정조의 장인인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조카였다. 그는 순조대 초반에 특지로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⁴⁶⁾ 그 뒤로 총융사·금위대장·한성부판윤·공조판서 등의 요직을 거쳤다.⁴⁷⁾ 그렇지만 서만수 사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기후는 이조원과 얽혀 김조순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김기후도 김조순계에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김조순이 차자를 올린 지 이틀 뒤인 8월 14일이 되면,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捲堂)을 하며 이조원의 죄를 바꾸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⁴⁸⁾ 그리고 8월 16일에 영의정 남궁철을 비롯한 대신들이 다시 이조원·김기후의 처벌을 청하자, 효명세자는 순조에게 여쭙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마침내 이조원을 유배보냈다. 이때 갑술년 흉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김기서(金基敍, 1765~?)도 함께 유배되었는데, 김기서도 김기후와 마찬가지로 청풍 김씨 가문에 속한다.⁴⁹⁾

홍문관에서는 두 사람이 유배된 후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청하고 있었다. 유배는 형벌이 가벼우므로 국문을 해야 하며, 처분에서 제외된 김기후까지 함께 논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금부의 당상들도 이조원 무리의 국문을 청하였고, 8월 18일에는 대신들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고 삼사의 신하들이 청대하여 처분을 내려야 한다

46) 『순조실록』 권10, 순조 7년 11월 19일 (병진).

47) 『순조실록』 권14, 순조 11년 5월 13일 (경인); 『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 7월 9일 (기사);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20일 (기미);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5월 5일 (계유).

48)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4일 (정해).

49)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6일 (기축).

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효명세자는 ‘김기후는 다른 사람의 종용을 받은 것이므로 문책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이조원과 김기후는 맥락이 불을 보듯 명백하여 국문을 시행할 것조차 없다.’고 하며 외딴 섬에 안치하라고 하령하였다.⁵⁰⁾ 결국 이조원과 김기서는 각각 흑산도(黑山島)와 추자도에 유배되는데,⁵¹⁾ 이는 국문을 가하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효명세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로도 대신들과 삼사의 신하들이 이조원 무리에 대한 국문을 요청하였으나, 효명세자는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대신 이조원과 김기서를 위리안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⁵²⁾ 효명세자의 조치가 있고 나서도 삼사에서는 청대하려고 하였고, 그때마다 효명세자는 이들을 체차하거나 물리쳤으며,⁵³⁾ 승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기후의 아들 김택선(金宅善, 1784~?)을 서용하기도 하였다.⁵⁴⁾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이조원·김기후·김기서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효명세자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효명세자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순조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⁵⁵⁾ 대리청정기 인사 발탁도 그러한 목적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대리청정을 시작할 무렵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세력은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가문과 그 측근들이었으므로 효명세자는 자신의 의도에 호응할 인물로 이조원과 김기후 등을 선택하고 보호한 것이다.

50)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7일 (경인);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8일 (신묘).

51)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19일 (임진).

52)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21일 (갑오).

53)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22일 (을미);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24일 (정유);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8월 25일 (무술).

54)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10월 5일 (정축).

55) 김명숙, 앞의 책, 2004, 43쪽.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만수 사건의 당사자들을 대하는 효명세자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 김조순계인 서만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을 내린 반면, 이조원 등에 대해서는 신료들의 끈질긴 처벌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서만수 사건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계기로 결집된 반 안동 김씨 세력이 서만수의 탐학상을 공격하여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안동 김씨 세력이 이조원을 탄핵함으로써 역공에 나선 사건으로 해석된다.⁵⁶⁾

서만수 사건을 두 정치세력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는 효명세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서만수의 유배는 대리청정 초기 효명세자의 김조순계 견제라는 성격을 가지며, 서유규의 호소는 김조순계의 반발이 담겨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도 생각된다. 또한 김조순계의 입장에 서서 이조원을 탄핵한 근기남인의 행위는 김조순계와 근기남인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Ⅲ. 효명세자의 정국 주도 노력과 김교근 사건

서만수(徐萬修) 사건 이후에도 효명세자(孝明世子)는 자신을 지지해줄 측근세력을 형성하며 입지를 강화해나갔다. 효명세자의 측근 관료는 영조 말~정조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척족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청명당(淸明黨) 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임오화변(壬午禍變) 이후 영조(英祖, 1694~1776)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척신세력을 중심으로 탕평을 추진하려 하자, 이들 척신세력의 전권을 견제하려는 노론 준론계의 비밀결사 조직인 청명당이 결집되었는데,⁵⁷⁾ 청명당은 정치적으로 사림의 공의를 존중하고 청명을 지켜 척

56) 金明淑, 「勢道政治期(1800~1863)의 政治行態와 政治運營論 - 反安東 金氏勢力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7~51쪽.

신의 전권과 권귀의 사리추구를 견제하면서, 노론만이 군자당임을 자임하며 노론 사류의 대동단결을 강조한 정치세력이었다.⁵⁸⁾

측근관료 가운데 김로(金鏞, 1783~1838)는 정조대에 영의정을 역임하고 청명당계 핵심인사였던 김익(金熲, 1723~1790)의 손자로서 자신이 청소(淸素)한 가문 출신임을 내세워 대리청정기에 청류를 중용하자는 분위기를 주도하며, 노론 사류의 대동단결을 주장하였다. 이인부(李寅溥, 1777~?)도 청명당계였던 심환지(沈煥之)의 재종인 심현지(沈顯之)의 외손으로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사류(士類)와 청의(淸議)를 중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노경(金魯敬, 1766~1837) 역시 청명당계 인물인 유언호(俞彦鎬, 1730~1796)와 인척간이고, 김노경의 종조부인 김귀주(金龜柱)는 영조 말 노론 청류와 연결되어 벽파를 형성하였다. 조만영(趙萬永, 1776~1846)과 조인영(趙寅永, 1782~1850) 등 풍양 조씨 가문도 그의 종조부인 조정(趙暎, 1727~1789)과 조정(趙日+政, 1719~1775)이 청명당계 인물이었고, 홍기섭(洪起燮, 1776~1831)은 조인영의 고종사촌으로서 그 역시 풍양 조씨 가문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다.⁵⁹⁾

측근관료들 가운데 김로와 서준보(徐俊輔, 1770~1856)는 문무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조만영은 훈련대장과 선혜청 당상을 겸직하면서 군권과 재정을 전담하였다. 호조판서 직책도 김교근(金教根)이 한 달간 재직한 것을 제외하면 조만영·김노경·김로가 번갈아가며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비변사 당상을 역임하였는데, 이는 김조순이 정계의 핵심에서 물러날 만큼 안동 김씨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비변사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명세자는 1829년(순조 29) 10월에 이르러 현임 의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57) 朴光用, 「蕩平論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321~324쪽; 김명숙, 앞의 책, 2004, 38쪽.

58) 朴光用,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0~51쪽, 184쪽; 김명숙, 앞의 책, 2004, 39쪽.

59) 김명숙, 앞의 책, 2004, 39~40쪽.

자신이 직접 국무를 처리하고자 할 만큼 독자적인 정치기반이 마련되었다.⁶⁰⁾

그러한 가운데 1829년 7월 20일, 부호군 심영석(沈英錫, 1767~?)이 김조순(金祖淳)의 7촌 조카인 호조판서 김교근과 그 아들 김병조(金炳朝)를 탄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영석이 김교근을 비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고 뇌물로 세력을 규합하였으며, 앞잡이를 풀어 안을 정탐하고 밖을 통제하였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김병조에 대해서는 개성유수 재임 시절 주전(鑄錢)을 빌미로 백성들의 재물을 속여 빼앗았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효명세자는 죄줄 만한 단서가 없는데도 날조하여 중신(重臣)을 망신 주었다고 하며 심영석을 북정부(北靑府)에 정배시켰다.⁶¹⁾

심영석을 유배하라는 명령이 있자, 다음날인 7월 21일 정언 한진호(韓鎭庾)가 나서서 심영석의 죄명을 정침(停寢)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번에도 효명세자는 '심영석이 전모(前茅)가 되고 한진호가 후원(後援)이 되었다.'고 하며 한진호를 진도군(珍島郡)에 유배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근기남인 정언 권대궁(權大靑, 1790~?)을 비롯한 대간들도 심영석을 유배보내라는 명령을 정침할 것을 청하고 김교근 부자를 논박하였으나, 오히려 체차되는 처지에 놓였다.⁶²⁾ 7월 22일에는 홍문관에서 심영석과 한진호에 대한 처분을 정침해달라고 청하였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³⁾

7월 24일에는 부교리 이유하(李游夏, 1767~?)가 상서하여 김교근 부자의 유배를 청하는 동시에 심영석과 한진호를 비호하였는데, 이때에도 효명세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⁶⁴⁾ 논박을 당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김교근을 다시 들어오도록 신칙하기까지 하였다. 김교근이 복귀하지 않자, 효명세자는 김교근을 체직시켰다가 8월 20

60) 김명숙, 앞의 책, 2004, 41~43쪽.

61)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7월 20일 (임자).

62) 『승정원일기』 2243책, 순조 29년 7월 21일 (계축).

63)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7월 22일 (갑인).

64)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7월 24일 (병진).

일에는 형조판서로 삼았는데,⁶⁵⁾ 이번에도 김교근이 끝내 들어오지 않자, 황해수사(黃海水使)로 보외하였다가 옹진부(甕津府)에 유배하는 처분을 내렸다.⁶⁶⁾ 그러나 효명세자는 김교근이 옹진부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자신이 김교근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김교근이 무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며 곧바로 그를 풀어주었다.⁶⁷⁾

이후 김교근 부자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간 동안 정계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순조 말까지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김교근 부자를 탄핵한 이들을 살펴보면 근기남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김교근을 탄핵한 심영석은 숙종~영조대에 걸쳐 정치 활동을 하며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한 심단(沈檀, 1645~1730)의 증손자이고, 한진호는 근기남인의 주요 인사인 한치응(韓致應)의 친척이었으며, 이유하는 순조대 초반 벽파 공격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근기남인이 김교근 부자를 탄핵한 사건을 두고 효명세자의 우익이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⁶⁸⁾ 김교근 사건에 앞서 1827년(순조 27) 3월에 복인인 대사간 임존상(任存常, 1772~?)이 안동 김씨 계열인 우의정 심상규(沈象奎, 1766~1838)의 권세와 사치에 대해 탄핵한 사건⁶⁹⁾과 4월에 소론인 집의 조경진(趙璟鎭, 1773~?)이 김조순의 아들인 김유근(金迪根, 1785~1840)이 천첩을 데리고 평안감사로 부임한 일에 대해 탄핵한 사건이 있었다.⁷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에는 당시 이조판서였던 김교근이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가 1829년에 이르러 근기남인의 탄핵을 받고 옹진부

65)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4일 (을축);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6일 (정묘);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20일 (신사).

66)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24일 (을유);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28일 (기축).

67)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9월 9일 (경자).

68)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0, 96·104쪽; 김명숙, 앞의 책, 2004, 33쪽.

69)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23일 (무술).

70)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4월 30일 (을해).

로 유배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이끌어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효명세자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임존상·조경진·심영석·한진호·이유하와 같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소론·남인·북인 세력을 사헌부·사간원의 언관으로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안동 김씨계 핵심 인물의 사치와 권귀성(權貴性)을 공격하게 하여 공론에 따라 축출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⁷¹⁾

그러나 근기남인의 김교근 부자 탄핵은 효명세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김조순계가 효명세자의 세력 확대를 견제한 사건으로 생각된다. 김교근이 김조순의 7촌 조카로서 안동 김씨 가문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효명세자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안동 김씨 계열의 인사로부터 효명세자 측근세력과 얽여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1830년(순조 30) 5월 효명세자가 홍서하자,⁷²⁾ 우선 부수찬 신면주(申冕周, 1768~1845)가 김교근 부자를 탄핵하다가 유배된 심영석과 한진호의 방환을 청하였다.⁷³⁾ 이어서 10월 28일, 장령 이진화(李鎭華, 1771~?)는 김교근 부자가 권문(權門)과 체결한데다가, 서쪽 고을을 안핵한 실정은 ‘자기편을 도와주고 상대편을 억제[扶抑]’하는 데에 관계된다고 하며 김교근을 먼 섬에 정배하고 심영석과 한진호를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⁷⁴⁾

여기서 서쪽 고을을 안핵하였다는 말은 1827년(순조 27) 초산부사 서만수의 탐학상이 보고되었을 때, 김병조가 안핵사에 임명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편을 도와주고 상대편을 억제하였다.’는 이진화의 주장을 보면, 김병조가 안핵사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서만수를 억제하였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

71) 김명숙, 앞의 책, 2004, 31~35쪽.

72)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6일 (임술).

73) 『승정원일기』 2257책, 순조 30년 8월 27일 (임자).

74)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0월 28일 (임자).

다.

앞에서 언급한 서유규(徐有圭)의 두 번째 호소에서도 ‘관찰사(=이희갑)와 안핵사(=김병조)가 (서만수를) 무함하고 (죄상을) 뒤집어씌운 것이며, 이조원(李肇源)의 세력만 믿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이 등장한다. 이러한 발언에다가 서만수가 처벌된 직후 김병조는 성균관대사성으로, 이용수는 한성부판윤으로, 김교근은 이조판서로 승진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김교근과 이조원이 정치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동시에 효명세자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화는 이학수(李鶴秀, 1780~1859)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학수는 이민보(李敏輔)의 손자이자, 순조대에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한 이시원(李始源, 1753~1809)의 아들이며, 이조원의 조카이다. 여기서 이진화는 이학수가 그의 숙부 이조원의 흥역하는 마음을 물려받아 진출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였으며, 이조원의 죄명이 드러난 뒤에 이르러서는 국시(國是)가 크게 정해져 예단(睿斷)이 엄정하였으므로 자취를 감추고 인사(人事)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도리어 거리낌 없이 날뛰었다고 하며 역시 먼 섬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다.

‘국시가 크게 정해져 예단이 엄정하였다.’는 이진화의 발언을 보면, 효명세자가 이조원을 처분한 것이 효명세자의 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김조순계 인물인 서만수를 단호히 처분한 것과 달리 이조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해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국시가 크게 정해져 예단이 엄정하였다.’는 말은 김조순계가 효명세자의 뜻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김교근을 공격하였던 심영석과 한진호를 석방해주자고 건의한 이진화의 상소를 두고 김조순계가 자기 세력의 여유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⁷⁵⁾ 이 해석 역시 심영석과

75)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0, 104쪽.

한진호로 대표되는 근기남인이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려는 효명세자의 편에 서서 김교근을 탄핵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조순계가 근기남인을 석방해주자고 건의한 사실을 두고 자기 세력의 여유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호 세력의 석방을 청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생각된다. 즉 근기남인이 효명세자의 비호를 받고 있던 김교근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유배된 상황에서 김조순계는 효명세자 사후 김교근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호 세력인 근기남인을 구호하려고 한 것이다.

한편 이진화의 상소 이후로도 정언 이정기(李正耆, 1789~1846), 대사간 윤명규(尹命圭, 1775~?), 헌납 이남규(李南圭, 1765~?), 교리 이재학(李在鶴, 1790~?) 등 대간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영의정 남공철(南公轍)과 우의정 정만석(鄭晩錫, 1758~1834)까지 김교근의 처벌을 청하는 연명차자를 올렸다.⁷⁶⁾

11월 12일에 이르면 순조(純祖)가 이학수와 김교근 부자를 성토하는 일을 그만둘 것을 명하는데,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6일 이진화와 정언 윤치수(尹致秀, 1797~?)가 다시 이들을 성토하였다. 이학수에 대해서는 ‘대대로 김귀주와 김한록(金漢祿, 1722~1790)의 패론(悖論)을 지키면서 적의 편에서 기치를 세워 흉측한 계획과 반역하려는 마음이 유래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며 국청을 설치하여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하였다.

김교근에 대해서는 ‘이학수와 몸을 숨길 계책의 교묘함을 규합하고, 좌우의 근습(近習)에게 아첨하면서 교결하여 궁중의 동정을 아침저녁으로 염탐하여 살피게 한데다가, 조정의 진퇴와 출척을 모두 자기 손에서 말미암는 것처럼 하여 권력을 팔아 재물을 불러들이고

76) 『승정원일기』 226책, 순조 30년 11월 2일 (병진): 『승정원일기』 2260책, 순조 30년 11월 10일 (갑자): 『승정원일기』 2260책, 순조 30년 11월 11일 (을축): 『승정원일기』 2260책, 순조 30년 11월 12일 (병인).

77)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12일 (병인).

재물을 팔아서는 권력을 불러들이면서 비류(匪類)들을 자기 사람으로 맞아들여 식견이 없는 부류들이 따랐으며, 불계(不軌)를 도모하여 양성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며 김교근을 절도에 안치시키기를 청하였다.⁷⁸⁾

순조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832년(순조 32) 7월 27일 이르러서는 김교근 부자를 석방시켰으며,⁷⁹⁾ 1833년(순조 33) 6월 1일에는 김교근과 김병조에게 직첩을 도로 주기까지 하였다.⁸⁰⁾ 결국 이렇게 김교근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효명세자의 정국 주도 및 세력 확대에 대한 김조순계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김교근이 비록 김조순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효명세자의 비호를 받으며 그 측근들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였다. 그가 김조순계의 우호 세력인 근기남인의 공격을 받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순조의 재집정과 근기남인의 노론 청류 탄핵

근기남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발탁하였던 노론 청류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 효명세자 사후, 김조순계는 김교근(金教根)을 비롯하여 대리청정기에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함으로써 한동안 위축되었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반면, 순조(純祖)는 재집정을 통해 대리청정 이후의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정국의 주요 현안은 김로(金鏐)·김노경(金魯敬) 등 노론 청류의 처분을 둘러싼 논의였다.

1830년(순조 30) 5월 6일 효명세자가 홍서한 직후, 삼사에서는 효

78)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26일 (경진).

79)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7월 27일 (신미).

80)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6월 1일 (경자).

명세자를 치료한 의관들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⁸¹⁾ 5월 11일에는 지평 오치순(吳致淳, 1792~?)과 헌납 정신(鄭薰, 1773~?)이 효명세자가 복용할 당제에 자기 마음대로 시험 삼아 재료를 첨가한 약원제조 홍기섭(洪起燮)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청하자,⁸²⁾ 삼사의 관원들을 비롯해 관학유생들까지 나서서 홍기섭의 처벌을 청하였다.⁸³⁾

그러나 순조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토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5월 30일, 교리 윤석영(尹錫永, 1771~?)이 김로의 죄상을 거론하며 국청을 설치하여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한 것이다. 윤석영이 거론한 김로의 죄상을 보면, 첫째는 자신이 제거(提舉)가 아니면서 약재 첨가 여부를 마음대로 지휘하고 삼제(參劑)를 시험한 것, 둘째는 망령되게 김귀주(金龜柱)·김한록(金漢祿) 등 벽과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역하는 마음을 꾀하였다는 것, 셋째는 흉서를 올린 신의학(愼宜學, 1772~1829)과 서로 호응하였다는 것이었다.⁸⁴⁾

결국 순조는 홍기섭을 삭직하고 의관 이명운(李命運)을 절도에 안치하는 선에서 처벌을 끝냈다.⁸⁵⁾ 순조가 처분을 내린 뒤에도 성토가 지속되었다. 정언 송성룡(宋成龍, 1780~?)이 상소하여 김로를 탄핵하였고, 홍문관에서 김로를 비롯해 홍기섭과 이인부(李寅溍)를 탄핵하였다. 이인부와 신의학이 올린 흉서의 배후에 김로와 홍기섭이 있다는 것이었다.⁸⁶⁾

대사간 이인부가 올린 흉서는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당시에 상서한 것을 가리키는데, 청명한 조정에 있는 사대부들이 사류가 무엇이며 청의가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명세자에게

81)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9일 (을축).

82)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11일 (정묘).

83)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12일 (무진):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13일 (기사).

84)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30일 (병술).

85)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6일 (임진).

86)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7일 (계사).

사류를 권장하고 청의를 부지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⁸⁷⁾ 부호군 신의학의 상서는 1800년(정조24) 5월 30일에 있었던 정조(正祖, 1752~1800)의 오회연교(五晦筵教) 당시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성교(聖教)를 대양하고 비답을 용중하게 받은 뒤로 지금까지 오회연교를 가지고 효명세자를 위해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한탄스럽고, 이 의리가 어두워진다면 세도가 날로 떨어지고 사습이 날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⁸⁸⁾

신의학의 상서에는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었다. 오회연교 당시 안동 김씨 가문의 김이재(金履載, 1767~1847)가 벽파 이만수(李晩秀, 1752~1820)를 논척하여 탕평을 시도한 정조의 뜻을 따르지 않아 죄를 얻었던 사실이 있었다. 신의학은 김이재가 이만수를 논척하며 정조의 의리탕평에 반대하였던 사실을 효명세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심환지(沈煥之)·이서구 등 벽파의 공과(功過)를 재론하고, 김이재를 비롯한 안동 김씨 가문에 대해 논척한 것이기도 하였다.⁸⁹⁾

삼사에서는 오회연교에 대해 ‘정조가 진퇴(進退)와 용사(用捨)를 분명히 유시한 것이며, 정조의 깊은 뜻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하는 동시에 이서구에 대해서는 ‘홀연히 기회를 틈타 다른 사람을 무함하는 계략을 부리려고 하였다.’고 하며 이서구의 관작 추탈을 청하였다.⁹⁰⁾ 또한 관중추부사 남공철(南公轍)과 좌의정 이상항(李相瓚)은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국혼을 저지하려고 한 벽파 권유(權裕, 1729~1804)의 연원으로 이서구를 지목하였고, 신의학이 심환지를 ‘군자(君子) 쪽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이서구가 평소에 주장하였던 의논이라고 하였다.⁹¹⁾

이인부와 신의학이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이서구·권유 등

87)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24일 (을유).

88)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11월 17일 (정미).

89) 김정자, 앞의 논문, 2020, 85~91쪽.

90)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11월 23일 (계축).

91)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11월 24일 (갑인).

벽파의 정신을 전수하였다는 것에 있었다. 효명세자 사후에 홍문관 관원들이 이들의 상서를 문제시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 배후 인물로 김로와 홍기섭을 지목한 것이다. 이 뒤로도 6월 한 달 내내 김로·홍기섭·이인부 등을 공격하는 대간들의 요청이 이어졌고,⁹²⁾ 6월 29일에는 김조순계인 영중추부사 남궁철과 우의정 정만석(鄭晩錫)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여러 신하들의 상소를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⁹³⁾

그러던 중 8월 27일, 부사과 김우명(金遇明, 1768~?)이 상소하여 전 평안도관찰사 김노경의 처벌을 청하였다. 김노경이 대리청정기에 김로에게 빌붙었고, 조카사위 이학수(李鶴秀)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할 때에도 혈당으로 여겨 지휘(指揮)를 들어주었으며, 서유규(徐有圭)가 호소하였을 때에는 이조원(李肇源)의 역절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도리어 비호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내어 그 아들 이용수(李龍秀)로 하여금 원통함을 호소하게 한데다가 비밀로 덮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순조는 중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자식과 조카를 논한 김우명을 삭직하는 명을 내렸다.⁹⁴⁾

김우명은 수원 출신의 근기남인데, 김우명의 상소를 시작으로 김노경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김교근 사건 당시 근기남인 심영석(沈英錫)과 한진호(韓鎭辰)가 앞장서서 김교근 탄핵에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노경을 탄핵할 때에도 근기남인 김우명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김우명이 상소하고 나서 김조순계 인사들이 뒤이어 김노경을 탄핵하기 시작한 것도 김교근 사건 때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 말에는 정언 신윤록(申允祿, 1798~?)이 소를 올려 김로 등을 탄핵한 적이 있었는데, 8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순조가

92)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12일 (무술):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15일 (신축):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21일 (정미):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23일 (기유).

93)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6월 29일 (을묘).

94)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8월 27일 (임자).

비답을 내렸다. 신윤록은 김로가 홍기섭·조병현(趙秉鉉, 1791~1849)의 무리와 더불어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집에 모여 의논하면서 위로는 임금을 현혹시키고 아래로는 사악한 도당을 비호하였다고 하며 처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순조가 효명세자의 발인이 하루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히 징토한 죄를 물어 신윤록을 종성부(鍾城府)에 유배보낸 것이다.⁹⁵⁾

신윤록이 상소한 이후, 순조는 김로의 할아버지 김익(金燧)의 명덕과 숙부 김재찬(金載瓚, 1746~1827)의 근로는 잊을 수 없지만, 아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며 김로를 남해현(南海縣)에 안치하고, 이인부를 고향으로 내쫓을 것을 명하였다.⁹⁶⁾

한편 김우명이 김노경을 논척하자, 9월에 이르러서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김노경이 김로에게 아첨한데다가 이조원을 성도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숨기고 비호하였으며, 효명세자의 혼례 때 권유가 남긴 버릇을 답습하여 흥측한 말을 하였다고 하며 국청을 설치하여 전형을 바로잡도록 청하였다. 순조는 김노경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으며,⁹⁷⁾ 홍문관에서 다시 국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9월 24일 삼사에서 다시 한 번 국청을 설치하여 김노경을 신문하고 전형을 바로잡도록 청할 때에도 허락하지 않았다.⁹⁸⁾

그런데 9월 24일 삼사의 합계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남인 부수찬 신면주를 비롯하여 집의 박승현(朴升鉉, 1778~?)과 장령 권휘(權徽, 1768~?)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역시 김우명과 마찬가지로 근기남인에 해당한다. 박승현은 1815년(순조15) 안동 김씨 가문의 호군 김이교(金履喬, 1764~1832)가 홍문록에 권선(圈選)한 인물이며,⁹⁹⁾

95)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8월 28일 (계축).

96)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8월 29일 (갑인).

97)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9월 11일 (병인).

98)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9월 13일 (무진):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9월 24일 (기묘).

99) 『순조실록』 권18, 순조 15년 2월 19일 (을해).

권휘는 정조대에 사간원대사간 등을 역임한 권이강(權以綱, 1730~?)의 아들이다.

권이강은 1791년(정조15)에 있었던 홍낙안(洪樂安=洪羲運)의 장서(長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로서,¹⁰⁰⁾ 장서는 홍낙안이 당시 유행하고 있던 천주교 문제에 관하여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는 채제공계 남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권이강은 채제공계 남인을 공격하려고 한 홍낙안의 장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청한 것이었고, 이러한 채제공계 남인은 정조~순조대에 걸쳐 김조순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채제공계 남인은 앞서 이조원을 탄핵할 때와 마찬가지로 효명세자가 등용한 김로 등 노론 청류계를 탄핵할 때에도 이처럼 김조순계 인사들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25일 김조순계인 영의정 남공철, 좌의정 이상항, 우의정 정만석이 다시 김노경의 처벌을 건의하였고,¹⁰¹⁾ 9월 28일 삼정승이 또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김노경의 국문을 청하자, 마침내 순조는 김노경을 먼 섬에다 위리안치하라는 명을 내렸고, 김노경은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되었다.¹⁰²⁾

김노경이 위리안치된 뒤, 10월 13일 경상도 출신의 지평 이우백(李佑伯, 1796~?)은 김노경이 권유가 만고의 죄인이 된 것을 보고 서도 후신(後身)이 되기를 달갑게 여기고 법을 전수받아 정신을 보호하였고, 흥역을 몰래 비호하였으며, 권간에게 아첨하였다고 하며 김노경에 대한 국문을 청하는 한편, 이지연과 조병현을 무함한 신윤록을 국문하여 그 배후를 밝힐 것을 청하였다.¹⁰³⁾

기존 연구에서는 신윤록의 배후에 김노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우백이 소를 올려 신윤록의 배후에 있는 김노경을 철저히

100)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0월 30일 (신미).

101)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9월 25일 (경진).

102)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9월 28일 (계미);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0월 2일 (병술);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0월 8일 (임진).

103)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0월 13일 (정유).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김노경이 신윤록의 배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소 내용을 봤을 때, 이 유백이 신윤록의 배후로 김노경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단지 배후가 누군지 밝힐 것을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윤록은 근기남인인데, 이 무렵 근기남인은 김로·김노경 등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노론 청류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신윤록이 직접 김노경을 공격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로를 공격한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 나타나고 있다. 김노경이 김로에게 아첨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윤록이 김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김조순계 및 다른 근기남인과 마찬가지로 김노경을 포함한 노론 청류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추정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남인의 일부 세력들이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과 풍양 조씨 가문으로 각기 나뉘고 있었다는 해석¹⁰⁵⁾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두 가문 가운데 이 시기 근기남인이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가문은 김조순(金祖淳)으로 대표되는 안동 김씨 가문이었고, 풍양 조씨 가문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비록 근기남인이 안동 김씨 가문의 김교근을 탄핵한 적이 있으나, 이는 김교근이 효명세자 및 노론 청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외에 근기남인의 정치적 활동을 보면, 노론 청류에 대한 탄핵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한편 장령 이진화가 이조원의 흥역하는 마음을 물려받고 진출과 이익을 탐한 이학수(李鶴秀)의 배후로 김노경을 지목하자,¹⁰⁶⁾ 순조는 김노경에 대해 성토했을 것을 그만두라고 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사에서는 김노경의 일로 파면되면서까지 연일 구대(求對)한 끝에 11월 25일 마침내 김노경에게 천극(荐棘)하는 형벌을 더하

104) 김정자, 앞의 논문, 2020, 94쪽.

105) 김정자, 앞의 논문, 2020, 104쪽.

106)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0월 28일 (임자).

라는 순조의 명을 받아들였다.¹⁰⁷⁾ 순조가 김노경에게 형벌을 더한 뒤에도 이진화와 윤치수(尹致秀)가 합계하여 이학수와 김교근에게 가중 처벌을 할 것을 청하면서 그들의 근원으로 김노경을 지목하였는데,¹⁰⁸⁾ 이진화와 윤치수가 합계한 뒤로는 김로·김노경 등에 대한 처벌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1831년(순조 31) 8월 14일 대호군 홍기섭이 사망하였고,¹⁰⁹⁾ 1832년(순조 32) 3월 2일 흑산도에 천거되어 있던 이조원이 물고되었다.¹¹⁰⁾ 그러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이조원의 여러 아들을 사방으로 찬배할 것과 이조원의 혈당이자 김기서(金基敍)의 지친인 김기후(金基厚)의 관작 추탈을 청하기도 하였다.¹¹¹⁾ 4월 3일에는 영돈녕부사 김조순이 사망하였고, 순조는 김조순을 영의정에 증직하고 호조로 하여금 김조순의 장사비를 보내도록 명하였으며, 곧 이어 '충문(忠文)'이라는 시호를 내렸다.¹¹²⁾

그런데 7월 27일, 순조가 여러 죄인들의 석방을 하교함에 따라 신료들은 다시 노론 청류를 논척하기 시작하였다. 석방된 인물 가운데 이인부, 김교근·김병조(金炳朝) 부자, 김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¹³⁾ 승정원과 홍문관, 그리고 대사간 남이무(南履懋, 1780~?)가 이들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들의 요청은 상당히 선택적이었다. 김로를 탄핵하다가 유배된 송성룡과 신윤록도 이때 함께 석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오로지 이인부와 김교근·김병조 부자, 김로의 석방만을 반대하고 있었고, 송성룡과 신

107)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22일 (병자);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23일 (정축);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25일 (기묘).

108)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11월 26일 (경진).

109) 『순조실록』 권32, 순조 31년 8월 14일 (계사).

110)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3월 2일 (기유).

111)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3월 14일 (신유).

112)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4월 3일 (기묘);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4월 4일 (경진);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4월 5일 (신사).

113)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7월 27일 (신미).

윤록의 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순조의 단호한 태도로 대계(臺啓)가 정계(停啓)된 뒤에야 이인부 등도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고,¹¹⁴⁾ 김교근과 김병조는 직첩까지 도로 받게 되었다.¹¹⁵⁾ 이어서 1833년(순조33) 9월 13일, 순조는 고금도에 천극되어 있는 김노경에 대해서도 석방하라고 명을 내렸다. 근기남인 집의 정기화(鄭琦和, 1786~1840), 지평 정덕화(鄭德和, 1789~?) 등 대간들이 성명(成命)을 정침해달라고 청하였지만, 순조가 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김노경의 일을 정계하였고, 최종적으로 김노경의 석방이 이루어졌다.¹¹⁶⁾

김노경의 석방을 끝으로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발탁되었던 노론 청류에 대한 김조순계와 근기남인의 탄핵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리청정 당시 처벌받았던 김조순계와 근기남인이 정계로 복귀하게 된다. 1830년 10월 30일에는 장령 이진화의 상소로 인해 김교근 부자를 탄핵하다가 유배된 심영석과 한진호가 석방되었고,¹¹⁷⁾ 1832년 윤9월 22일에는 대리청정 당시 대사간 임존상(任存常)의 탄핵을 받았던 심상규(沈象奎)가 서용된 것이다.¹¹⁸⁾

그리고 1833년 6월 2일에는 평안도관찰사 심능악(沈能岳, 1766~?)이 서만수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였다. 서만수에게 원통함을 품은 무리들이 내통하여 서만수의 죄상을 만들어 내거나 작은 죄상을 크게 부풀렸으므로 실상을 구명하면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순조는 서만수의 죄명을 탕척해주었다.¹¹⁹⁾ 1827년 이래로 지속되었던 서만수 사건이 비로소 마무리된 것이다.

114)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8월 9일 (계미).

115)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6월 1일 (경자).

116)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9월 13일 (경진);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9월 14일 (신사);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9월 21일 (무자);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9월 22일 (기축).

117) 『승정원일기』 2259책, 순조 30년 10월 30일 (갑인).

118)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윤9월 22일 (을미).

119)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6월 2일 (신축).

심영석과 한진호의 석방, 심상규의 서용, 서만수의 죄명 탕측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위기를 맞았던 김조순계의 권력이 순조 재집정기에 이르러 다시 안정화되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1833년 4월 조만영(趙萬永)의 추천으로 김조순이 정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¹²⁰⁾ 9월에는 관학유생들이 김조순의 사당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는데,¹²¹⁾ 이로써 김조순의 권위가 더욱 확고해져 갔다.

김조순의 정조 묘정 배향에는 조만영·조인영(趙寅永)·이지연 등 풍양 조씨 가문 계열의 인사들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조만영 등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때 김조순계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효명세자 사후 순조 재집정기의 정치적 변동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는데, 이는 풍양 조씨 가문 역시 안동 김씨 가문과 마찬가지로 국왕의 외척이었다는 동질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¹²²⁾ 이들이 김조순의 정조 묘정 배향에 찬성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조순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는 근기남인도 적극적이었다. 김조순의 정조 묘정 배향 여부를 의논할 때 근기남인 대사간 홍영관(洪永觀)도 찬성하였는데, 이는 근기남인과 김조순계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기남인은 순조대 초반 이래로 김조순계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왔다. 특히 심영석·한진호, 김우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만수 사건 - 김교근 사건 - 노론 청류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근기남인은 효명세자와 연결된 이조원·김기후, 김교근·김병조, 김로·이인부·홍기섭·김노경 등을 앞장서서 공격하였다.

김교근 사건 때 근기남인이 김교근을 탄핵하였지만, 이는 김교근이 비록 안동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효명세자 및 그 측

120)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4월 10일 (경술):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4월 11일 (신해).

121)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9월 9일 (병자).

122)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0, 601쪽.

근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근기남인이 김교근을 탄핵하였다고 해서 김조순계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또 순조가 재집정한 뒤 근기남인이 곧바로 효명세자에 의해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한 행보는 근기남인과 효명세자의 정치 노선이 달랐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순조대 후반까지 근기남인과 김조순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근기남인이 김조순계의 우익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순조대 후반 근기남인(近畿南人)은 당시 정국에서 주요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安東金氏)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였다. 근기남인의 동향은 순조대 후반에 발생한 각종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대리청정이 시작된 직후 전초산부사 서만수(徐萬修)의 탐학상이 보고되자, 서만수의 아들 서유규(徐有圭)가 서만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봉조하 이조원(李肇源)과 대호군 김기후(金基厚)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조원의 아들인 이용수(李龍秀)가 서유규의 호소에 대해 항변하였다. 김기후 역시 서유규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며 반발하였는데, 효명세자는 이조원의 집안과 김기후가 서만수 측으로부터 무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용수와 김기후를 안심시켰다.

한편 서만수가 물고되자, 서유규가 서만수의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였다. 서유규는 서만수가 이조원의 역적 행위를 힘써 성토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화를 입고 죽게 되었으며, 서만수가 죄에 걸려든 것도 이조원·이용수 부자가 이조원이 갑술년[1814년(순조14)]에 꾸민 역적 모의를 발설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유규의 호소 직후 사건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신료들의 요청

이 제기되었으나, 효명세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전히 이조원과 김기후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자 사간 홍영관(洪永觀)과 지평 한진호(韓鎭庠)가 이조원에게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였으나, 효명세자는 이를 거부하며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갑술년의 홍서가 나왔을 때 국구가 미리 그 일을 알았다고 한 조정철(趙貞喆)의 상서가 나오자,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이 이와 관련하여 차자를 올렸다. 그러나 김조순은 이조원의 처벌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었다. 김조순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면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조순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정치세력으로 근기남인을 들 수 있다. 이조원을 탄핵한 홍영관이나 한진호는 모두 근기남인으로서 근기남인과 김조순 가문의 관계도 순조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6년(순조6)의 병인경화(丙寅更化)로 김달순(金達淳) 등 벽파가 제거될 때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시파와 함께 벽파를 적극적으로 성토한 이들이 바로 근기남인이었다.

순조대 후반 체제공계 남인의 주요 인물인 홍영관은 홍시부(洪時溥)의 아들이며, 한진호는 한치응(韓致應)과 친척이다. 또 홍영관의 딸과 한진호의 아들인 한계원(韓啓源)이 혼인을 하였는데, 이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내부 관계를 봤을 때, 이 시기까지도 근기남인의 다수가 김조순의 우호 세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서만수의 유배는 대리청정 초기 효명세자의 김조순계 견제라는 성격을 가지며, 서유규의 호소는 김조순계의 반발이 담겨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김조순계의 입장에 서서 이조원을 탄핵한 근기남인의 행위는 김조순계와 근기남인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서만수 사건 이후에도 효명세자는 자신을 지지해줄 측근세력을 형성하며 입지를 강화해나갔다. 측근관료로는 청명당(淸明黨) 인사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던 김로(金鏐), 이인부(李寅溥), 김노경(金魯

敬) 등과 조만영(趙萬永), 조인영(趙寅永)으로 대표되는 풍양 조씨(豐壤趙氏) 세력이 있었다.

측근관료들 가운데 김로와 서준보(徐俊輔)는 문무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조만영은 훈련대장과 선혜청 당상을 겸직하면서 군권과 재정을 전담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비변사 당상을 역임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심영석(沈英錫)이 김조순의 7촌 조카인 호조판서 김교근(金教根)과 그 아들 김병조(金炳朝)를 탄핵하였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심영석을 정비시켰다.

한진호와 이유하(李游夏)도 김교근 부자의 유배를 청하였는데, 이때에도 효명세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박을 당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김교근을 다시 들어오도록 신척하기까지 하였다. 김교근 부자를 탄핵한 이들을 살펴보면 근기남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심영석은 숙종~영조대에 걸쳐 정치 활동을 하며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한 심단(沈檀)의 증손자이고, 한진호는 근기남인의 주요 인사인 한치응의 친척이었으며, 이유하는 순조대 초반 벽파 공격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근기남인의 김교근 부자 탄핵은 효명세자의 정국 주도 및 세력 확대에 대한 김조순계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김교근이 비록 김조순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효명세자의 비호를 받으며 그 측근들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였다. 그가 김조순계의 우호 세력인 근기남인의 공격을 받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효명세자 사후, 김조순계는 김교근을 비롯하여 대리청정기에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함으로써 한동안 위축되었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반면, 순조(純祖)는 재집정을 통해 대리청정 이후의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효명세자가 흥서한 직후, 삼사에서는 효명세자가 복용할 당제에 자기 마음대로 시험 삼아 재료를 첨가한 약원제조 홍기섭(洪起燮)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순조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토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신료들이 김로의 죄상을 거론하며 국청을 설치하여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한 것이다. 결국 순조는 홍기섭을 삭직하고 의관을 절도에 안치하는 선에서 처벌을 끝냈으나, 순조가 처분을 내린 뒤에도 삼사에서는 김로를 비롯해 홍기섭과 이인부를 탄핵하였다.

그러던 중 부사과 김우명(金遇明)이 상소하여 전 평안도관찰사 김노경의 처벌을 청하였다. 김노경이 대리청정기에 김로에게 빌붙었고, 조카사위 이학수가 위복을 마음대로 할 때에도 혈당으로 여겨 지휘를 들어주었으며, 이조원의 역질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그 아들 이용수로 하여금 원통함을 호소하게 한데다가 비밀로 덮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김우명은 수원 출신의 근기남인인데, 김우명의 상소를 시작으로 김노경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김교근 사건 당시 근기남인 심영석과 한진호가 앞장서서 김교근 탄핵에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노경을 탄핵할 때에도 근기남인 김우명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김우명이 상소하고 나서 김조순계 인사들이 뒤이어 김노경을 탄핵하기 시작한 것도 김교근 사건 때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었다.

한편 순조가 여러 죄인들의 석방을 하교함에 따라 유배되었던 노론 청류들이 비로소 석방되었고, 탄핵을 받아서 끝내 유배되었던 김노경도 석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리청정 당시 처벌받았던 심영석과 한진호를 비롯한 근기남인이 정계로 복귀하게 된다. 심영석과 한진호의 석방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위기를 맞았던 김조순계의 권력이 순조 재집정기에 이르러 다시 안정화되었음을 뜻한다.

김교근 사건 때 근기남인이 김교근을 탄핵하였지만, 이는 김교근이 비록 안동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효명세자 및 그 측근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근기남인이 김교근을 탄핵하였다고 해서 김조순계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또 순조가 재집정한 뒤 근기남인이 곧바로 효명

세자에 의해 발탁된 노론 청류들을 탄핵한 행보는 근기남인과 효명세자의 정치 노선이 달랐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순조대 후반까지 근기남인과 김조순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근기남인이 김조순계의 우익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2021. 7. 26.) 심사일(2021. 8. 16) 게재 확정일(2021. 8. 17.)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訥菴記略』, 『豊墅集』

2. 저서 및 논문

김명숙,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 上·下, 청년사, 1990.

金明淑, 「勢道政治期(1800~1863)의 政治行態와 政治運營論 - 反安東金氏勢力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 2011.

김정자, 「「순조 후반 헌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韓國學論叢』 54, 2020.

김태희, 「다산의 해배과정과 19세기 정치적 상황」, 『다산과 현대』 11, 2018.

朴光用, 「蕩平論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申龍雨, 「翼宗代理聽政에 대한 考察 - 代廳施行 過程과 政務處理를 中心으로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 국왕,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韓國史論』 61, 2015.

鄭奭鍾, 「純祖年間の 政局變化와 茶山解配運動」, 『國史館論叢』 47, 1993.

최성환,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韓國史研究』 180, 2018.

최우혁, 「정조~순조대 近畿南人の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朝鮮時

代史學報』 90, 2019.

최재봉, 「세도집권기 김조순의 정국운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Political situation in the late King Sunjo's reign
and the role of the Geunginamin

Choi, Woo Hyouk

In the late King Sunjo(純祖)'s reign, Geunginamin(近畿南人) joine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Andong Kim(安東金氏)'s faction, a major force in the political situation. Immediately after Crown Prince Hyomyeong(孝明世子)'s agency ruling began, the avarice of former Chosanbusa Seo Man-su(徐萬修) was reported, and Seo Yu-gyu(徐有圭), the son of Seo Man-su, complained of Seo Man-su's injustice while attacking Lee Jo-won(李肇源) and Kim Gi-hu(金基厚), but the Crown Prince Hyomyeong showed lukewarm responses. Then Hong Young-gwan(洪永觀) and Han Jin-ho(韓鎭辰) asked for punishment against Lee Jo-won, which Crown Prince Hyomyeong refused to do so, showing a consistent attitude.

Hong Young-gwan and Han Jin-ho were both Geunginamin and ha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Andong Kim's family. The issue in which Seo Man-su was attacked and punished is characterized as Crown Prince Hyomyeong's Kim Jo-sun line(金祖淳系) check in the early days of agency ruling, and Seo Yu-gyu's appeal is believed to be a political event containing Kim Jo-sun line's backlash. Also, Geunginamin's move to impeach Lee Jo-won in Kim Jo-sun line's shoes is a good indication of Kim Jo-sun line's political connection with Geunginamin.

Even after the Seo Man-su incident, Crown Prince Hyomyeong strengthened his position by forming close aides to support him. Close officials included Kim Ro(金鰲), Lee In-bu(李寅溥), and Kim No-gyoung(金魯敬), who were related to Cheongmyeong-dang(淸明黨) figures, and Pungyang Cho(豐壤趙氏)'s faction represented by Cho Man-young(趙萬永) and Cho In-young(趙寅永). In this situation, Shim Young-seok(沈英錫), Han Jin-ho and Lee Yu-ha(李游夏) of the Geunginamin impeached Kim Jo-sun(金祖淳)'s relatives, Kim Gyo-geun(金教根), and his son Kim Byung-jo(金炳朝). The fact that the Geunginamin impeached Kim Gyo-geun and his son can be said to be a Kim Jo-sun line check on Crown Prince Hyomyeong's political leadership and expansion of power. Although Kim Gyo-geun was a close relative of Kim Jo-sun, he was protected by Crown Prince Hyomyeong and joined the political activities with his close aides.

After the death of Crown Prince Hyomyeong, the Kim Jo-sun line sought to strengthen its power base, which had shrunk for some time, by impeaching Kim Gyo-geun and Noron Cheongryu selected for agency ruling. On the other hand, King Sunjo wanted to lead the post-agency ruling political situation stably through re-establishment. Immediately after the death of Crown Prince Hyomyeong, the Samsa called for a stern investigation into Hong Gi-seop(洪起燮), who added ingredients to the medicine Crown Prince Hyomyeong was going to take. However, King Sunjo refused to accept their request, and the target of the attack gradually expanded. Officials asked to punish Kim Ro, citing his guilt.

Meanwhile, Kim Woo-myung(金遇明), a Geunginamin, appealed and asked for the punishment of Kim No-gyoung. After

Kim Woo-myung appealed, Kim Jo-sun's people began impeaching Kim No-gyoung, which was also very similar to the Kim Gyo-geun case. Meanwhile, when King Sunjo ordered the release of several sinners, Noron Cheongryu, who had been exiled, was finally released, and Kim No-gyoung, who had been exiled after being impeached, was finally released. And Geunginamin such as Shim Young-seok and Han Jin-ho, who were punished during agency ruling, returned to politics. The release of Shim Young-seok and Han Jin-ho means that the power of the Kim Jo-sun line, which faced a crisis during the agency ruling of Crown Prince Hyomyeong, has been stabilized again by the time of King Sunjo's come back to power.

The Geunginamin's move to impeach Noron Cheongryu selected by the Crown Prince Hyomyeong immediately after King Sunjo regained power proves that the Geunginamin and the Crown Prince Hyomyeong's political line were different. These circumstances confirm that the Geunginamin and Kim Jo-sun line were still in a partnership until the late King Sunjo's reign, and that the Geunginamin served as a friendly force for the Kim Jo-sun line.

Key words: Geunginamin(近畿南人), King Sunjo(純祖), Crown Prince Hyomyeong(孝明世子), Seo Man-su(徐萬修), Kim Gyo-geun(金教根), Kim Ro(金鏞), Kim No-gyoung(金魯敬)